[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논평]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학생인권 보장 책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

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"교육감의 학칙 인가권" 폐지가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급작스레 통과됐다. 이번 개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(이하 교과부)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강화된 것인 양 선전하고 있다. 그러나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는 현재 학교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외려 학교장의 독재만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에도 커다란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된다.

우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. 학생인권조례는 개별 학교의 학칙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, 현실적으로 조례에 불복종하는 학교들을 견인해낼 규제 장치를 별달리 갖고 있지 못하다. 그나마 조례의 현장 정착을 가능케 하는 보조적 장치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었다. 이 권한을 바탕으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학칙에 대한 인가를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많은 학칙들이 다시금 개정될 수 있도록 견인해낸 바 있다. 그런데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이 같은 권한이 폐지됨으로써 학생인권조례에 불복한 학칙이나 민주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학칙들을 견제할 중요한 수단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. 조만간 교과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개악되고 나면, 학생인권조례가학교 현장에 미칠 수 있는 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처럼 학교장의 독단적권한만 강화하고 학교사회 안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이 다시금 외면당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학교 자치의 강화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. 학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의 권한만 축소한다고 학교자치가 곧장 강화된다는 말인가.

학생인권조례의 입법적 의미를 법률을 통해 확장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을 지닌 국회가 학교 민주주의의 현실과 학생인권에 대해 이토록 조야한 이해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개탄 스럽다.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보수적 교육관료와 학교장들의 학생인권조례 불 복종 움직임이 거세지고 그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 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. 국회는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마 땅하다.

덧붙여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된 학칙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일이 없도록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인권 보장 책무를 여전히 다해야 할 것이다. 마찬가지로 학교장들에게도 동일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. 이번 법 개정을 명분 삼아 학생인권조례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학교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.

2012년 2월 2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